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조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3. 7.

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6년 2월 16일

나. 발 의 자 : 정선희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 2016년 2월 18일

라. 상정일자 :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6.3.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선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구의회 조례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 및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기영)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서 작성, 결산서 의회제출, 결산 승인 등 일정을 순차적으로 앞당길 필요성이 있어, 결산 승인하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정을 조정하려는 것임.
- 결산 승인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으로 출납폐쇄일이 전년도 대비 50일 앞당겨짐에 따른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자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2017.1.1.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원활한 회기운동을 위한 일정조정은 시기적절하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
----------	-----

제출연월일 : 2016년 2월 일

제 출 자 : 정선희의원 외 6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구의회 조례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 및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안제3조제1항)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한 정례회를 매년2회**”를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을 “**토요일 · 공휴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7월 1일**”을 “**6월 15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u>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u>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u> ----- ----- ----- ----- -----.</p>
<p>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u>의회의</u>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한다.</p> <p>② (생략)</p>	<p>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의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u>의한 정례회를</u> <u>매년2회</u>로 나누어 개최하되, 매 회기는 30일 이내에서 개최한다.</p> <p>②영 제54조의 규정에 <u>의한 정례회</u>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u>공휴일인</u>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p>	<p>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 ----- <u>따라 정례회를</u> <u>매년 2회</u> ----- -----.</p> <p>② ----- <u>따라</u> ----- -----.</p> <p>---- <u>토요일·공휴일</u> ----- -----.</p>

현행	개정안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u>7월 1일</u>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 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 0월 중에 집회하되 집회일은 의회 의 의결로 정한다.</p> <p>2. (생략)</p> <p>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u>의한</u> 결산의 승인 및 <u>기타</u>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제 1항의 규정에 <u>의한</u>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u>의한</u> 예산안의 의결 및 <u>기타</u>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 리) ①의회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u>의하여</u> 임시회를 개최하되 매 회기 는 15일 이내에서 개최한다.</p> <p>② (생략)</p>	<p>1. ----- <u>6월 15일</u>---</p> <p>----- . -----</p> <p>-----</p> <p>-----</p> <p>----- .</p> <p>2. (현행과 같음)</p> <p>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p> <p>-----</p> <p><u>따라</u> ----- <u>그 밖에</u> ----</p> <p>----- .</p> <p>② -----</p> <p>----- <u>따른</u> -----</p> <p>----- <u>따른</u> --</p> <p>----- <u>그 밖의</u> -----</p> <p>----- .</p> <p>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 리) ① -----</p> <p><u>따라</u> -----</p> <p>----- .</p> <p>② (현행과 같음)</p>